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86
----------	-----

2022년 11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
- 나. 제출일 : 2022년 11월 8일
- 다. 회부일 : 2022년 11월 9일
- 라. 상정일 :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2년 11월 14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정헌재)

가. 제안이유

-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서는 천재지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 2)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이태원 사고 해당 지역인 서울특별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22.10.30.)

나. 주요내용

1) 감면대상자

-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함)

2) 세목별 감면내역

○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 상기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 개인분 및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을 면제한다.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2022년 2기분 및 2023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 재산세 특별시분 및 도시지역분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 특별시분 및 도시지역분을 면제한다.

○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을 면제한다.

○ 취득세

- 이태원 사고 사망자의 소유였던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상기 감면대상자가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가.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이태원 참사(2022.10.29.) 사회재난에 따른 피해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에 따라 2023년까지 지방세**를 면제하고자 의회 의결(동의)을 얻기 위한 것임.

* 모, 배우자 및 자녀 또는 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을 경우 사실상의 보호자

**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자동차세(소유분), 재산세(특별시분 및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취득세(상속)

※ 이태원 참사로 서울특별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22.10.30.)

나. 동의안 주요 내용

- 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의 유가족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하는 행정안전부의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에 따른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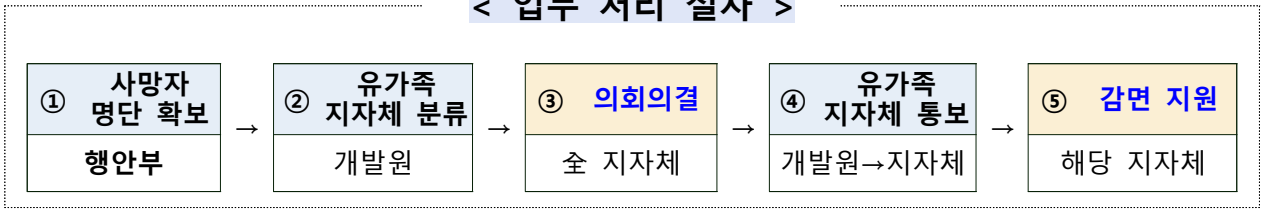
- 지방자치단체의 감면동의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2022년 12월 자동차세부터 2023년 지방세 부과세목 등을 직권으로 면제하되 누락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신청을 통한 감면을 병행하여 추진하려는 것임.

※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

< 감면 지방세 종류 및 내용 >

세 목	감면 대상	납기
① 주민세(개인분)	• 사망자 가족 (개인, 개인사업자)	8월
② 자동차세	• 사망자 가족 소유 자동차	6월, 12월
③ 재산세	• 사망자 가족 소유 토지·주택 등	7월, 9월
④ 지역자원시설세	• 사망자 가족 (소방분)	
⑤ 취득세	• 사망자 부동산 등을 그 가족이 상속취득	사망일부턴 6개월내

< 업무 처리 절차 >



나. 지방세 감면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제2조제5항)에서는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 ③ (생략)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① ~ ④ (생략)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 먼저, 본 사회재난인 이태원 참사 사고가 지방세 감면 대상인 재해에 해당 하는지, 감면 동의안의 내용이 법·령의 지방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이하 생략)

- 행정안전부에서는 본 지방세 감면 사유의 “재해”에 대하여, “재해”의 사전적 의미가 ‘재앙으로 말미암아 받는 피해’를 의미하므로, 반드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 같은 법(제3조제1호나목)의 “사회재난”도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다고 해석한바 있음(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531(2020.3.9.)).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재해(災害)「명사」: 재앙으로 말미암아 받는 피해. 지진, 태풍, 홍수, 가뭄, 해일, 화재, 전염병 따위에 의하여 받게 되는 피해를 이른다.

- 이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본 이태원 참사 사고로 인한 희생자 유가족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지방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

다. 지방세 감면 동의 시급성 및 필요성

- 대통령은 이태원 일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 참사 사고와 관련하여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2022.10.30.)한바 있고,
 - 행정안전부는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시행하였음.
- *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 통보」(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488(2022.11.2.))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재무국)은 해당 유가족에 대하여 2022년 12월부터 2023년까지 해당 6개 세목의 서울특별시세를 면제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 사회적 재난으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기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 2022년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 감면 근거 마련을 위해서는 과세기준일(2022.12.1.) 전까지 지방세 감면 근거 마련이 필요한바, 본 동의안 의결의 시급성도 있는 것으로 사료됨.

※ 2022.11.14. 위원회 처리 시 2022.11.15. 본회의 의결 가능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의원이 발의하거나 시장·교육감·위원회가 제출·제안한다.

② (생략)

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이하 생략)

라.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사회적 참사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 면제를 통하여 지원하려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동의안 제출일 현재 그 지원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본 동의안에 따른 지방세 감면 규모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 참사 피해자 가족 등이 지방세 감면 대상 과세물건(부동산, 자동차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참사 피해자로부터 상속 받는 과세물건이 없는 경우 본 동의안에 따른 세제 지원이 발생할 수 없는 점 등
 - 지방세 감면 대상 부동산 등 과세물건이 없거나, 있더라도 재산 규모에 따라 그 지원액에 차이가 발생하여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점에서,
- 지방세 감면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여줌으로서 세수 감소를 수반하여 간접 지원하는 지방세 감면 방식보다는, 감면 대상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직접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안 번호	386
----------	-----

제출년월일 : 2022년 11월 8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서는 천재지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 나.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이태원 사고 해당 지역인 서울특별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22.10.30.)

2. 주요내용

가. 감면대상자

-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함)

나. 세목별 감면내역

-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 상기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 개인분 및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을 면제한다.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2022년 2기분 및 2023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 재산세 특별시분 및 도시지역분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 특별시분 및 도시지역분을 면제한다.
-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을 면제한다.
- 취득세
 - 이태원 사고 사망자의 소유였던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상기 감면대상자가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 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지방세 감면규모 등】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 작성자 : 세제과 세제정책팀 서범하 (☎ 2133-3354)